



Providing Excellence In Client Services

월간 뉴스레터

2016년 2월호

Monthly Newsletter of Hanul Choongjung LLC

Contents

회계정보

- 비상장 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의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중요성 회계정책에 따른 연결 범위 판단 (K- IFRS 실무사례와 해설)

세무정보

- 2015년 귀속 연말정산 납부 세액 분납 방법

한울회계법인 업무소개

- 감사, 인증 및 관련 재무자문
- 세무신고/세무자문/세무불복
- 국제조세/이전가격
- 기업관리업무 서비스(BPO)
- 지역 및 관광개발컨설팅
- 전략/인사/리스크 /관리회계/마케팅/신사업전략 등
- SOC 컨설팅
- 기업금융/구조조정/M&A/Transaction Service

[한울회계법인은 매출액기준 업계 7위 규모이며, **Global Top 10** 회계 네트워크의 하나인 **Crowe Horwath International**의 한국 **Member Firm**입니다.]

한울회계법인 Hanul Choongjung LLC 의 Newsletter 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판단 또는 결정의 근거로서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는 그 적용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 시에는 한울회계법인의 해당 전문가와 사전에 상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뉴스레터 관련 연락처]

▶ 연락처

한울회계법인
Hanul Choongjung LLC
Member Crowe Horwath International

전화번호 : 02-316-6659(교환 316-6600) - 팩스번호 : 02-775-5885

이메일 주소 : secretary@crowehorwath.co.kr

Website : www.crowehorwath.co.kr

▶ 사무실 위치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88길 14, 신도빌딩 5~8층, 10층 (우: 06179)

QRM 본부
02 - 2009 - 5718
회계소식 등
비상장 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의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적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법\$159, 시행령\$167)은 주권상장법인 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에 대하여 사업보고서 공시의무를 부과 하고 있음. 이에 따라 해당 사항이 있는 비상장법인은 사업연도말 경과 후 90일 이내에 사업보고서를, 반기·분기말 경과 후 45일 이내에 반기보고서 및 분기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함.

■ 적용대상 비상장법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대상 법인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증권의 소유자 수(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500인 이상인 발행인

가. 주권 외의 지분증권[집합투자증권과 유동화전문회사 등]

나. 무보증사채권

다. 전환사채권·신주인수권부사채권·이익참가부사채권 또는 교환사채권

라.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마. 증권에탁증권

바. 파생결합증권

[주의하여야 하는 법인]
▪ 주권상장을 준비 중이거나, 장외거래가 활발한 법인

주주 수가 500인 이상으로 급증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에 해당 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상장폐지법인

모집·매출한 법인에 해당하므로 파산, 해산사유 발생 등 면제사유가 없으면 사업보고서를 계속 제출하여야 함.

[사업보고서 제출 면제사유]

▪ 모집·매출법인: 주주 수가 25명 미만으로 감소하고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받은 경우

▪ 주주 수가 500명 이상인 외감대상법인: 주주 수가 300명 미만으로 감소하거나 외부 감사대상에서 제외된 법인

■ 제출 대상 보고서

- 사업보고서 등 정기보고서
법정기한(사업보고서 90일, 분·반기보고서 45일) 이내에 공시
- **주요사항보고서**
부도, 당좌거래가 정지, 영업 정지, 회생절차 개시, 해산, 자본 또는 부채의 중요한 변동,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을 양수도, 자기주식을 취득/처분 등 법인의 경영·재산 등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등 제출사유가 발생한 날의 익일까지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

■ 감사계약체결보고서에 상기 사항 신고

2011.10.18.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여 '감사계약 체결보고서'에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비상장법인 해당 요건을 기재 하도록 함.

■ 유의사항 및 주요 위반사례**(사례1)**

증권을 모집한 실적이 있는 법인은 외부감사대상법인에서 제외되거나 주주수가 300명 미만으로 감소하더라도 25명 이상인 경우에는 정기보고서 제출의무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사례2)

회사 자체 결산이 지체되거나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지연수령 하더라도 정기보고서 제출의무가 유예되거나 면제되지 않습니다.

(사례3)

IPO 상장 준비 중인 법인은 상장예비심사청구에 앞서 자본시장법상 정기보고서 제출대상법인 여부를 더욱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외감대상법인 E사는 IPO 상장 준비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장외에서 주식거래가 활발해짐에 따라 주주수가 500인 이상으로 급증하여 정기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 해당되었으나, 정기보고서 제출의무를 인지하지 못하여 20x1년도 사업보고서 및 20x2년도 1분기보고서를 미제출 함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함.

중요성 회계정책에 따른 연결범위 판단 (K-IFRS 실무사례와 해설)

중요성 회계정책에 따른 연결범위 판단

■ **중요성 회계정책에 따른 연결범위 판단**

(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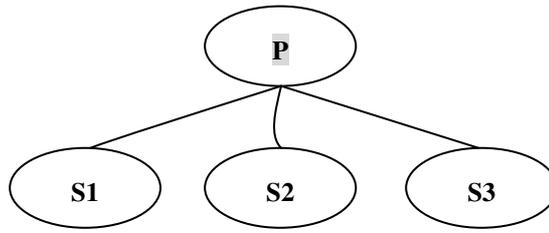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기업은 제 1008호에 따라 연결범위를 결정할 수 있는가?

- 연결재무제표에는 모든 종속기업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110호)
- 회계정책의 적용효과가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회계정책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1008호 문단8)

현황

■ **현황**

P는 자신의 회계정책에 따라 총자산의 1%에 미달하는 S2, S3을 연결범위에서 제외하고 S1만을 연결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자 한다.



질문

■ **질문**

P는 자신이 정한 중요성 기준에 따라 연결범위를 결정할 수 있는가?

해설

■ **해설**

- 제1110호: 적용범위 제외로 명시된 일부를 제외하고 연결재무제표는 모든 종속기업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규정
- 제1008호: 회계정책의 적용효과가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회계정책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 (문단 8) 조건
- 해당 종속기업이 연결범위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이용자들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정보의 질적 특성도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그 종속기업에 대한 정보는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 가능
- 따라서 이러한 정보를 누락하더라도 회계규정을 위배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음.
- 결론적으로, 모든 종속기업을 포함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종속기업을 연결하더라도 그 효과가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결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 의견

세무자문본부

02 - 316 - 6600

세 무 정 보

2015년 귀속 연말정산 납부 세액 분납 방법

1. 분납 대상

○ '15 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세액이 10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6 년 2 월분~4 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까지 나누어 원천징수 가능(소법 §137④)

* 추가 납부세액 10 만원 이하인 경우는 2 월 급여 지급시 전액 원천징수

2. 분납방법

○(근로자) 2 월 급여지급시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분납 신청

주요내용

-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에 분납 신청 항목란이 추가되어 “분납신청 여부”란에 소득세법 제 137 조제 4 항에 따라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이 10 만원 초과하는 경우에 추가 납부세액의 분납신청 여부를 표시할 수 있음

* (2016.2. 개정 예정) 공포일부터 시행하여 이번 연말정산부터 적용가능

○(회사) 근로자의 분납신청에 따라 원천징수·납부하고 「분납자 명세서」를 작성하여 관리·보관. 다만, 분납신청한 근로자가 분납기간 중 퇴사(전출)하는 경우 퇴사(전출)시 분납금액 전액을 원천징수

3. 분납 관련 달라진 내용

구 분	2014 년 귀속	2015 년 귀속
분납 신청시기	3 월 급여 지급분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 시기('15 년 4 월)	2 월 급여 지급분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 시기('16 년 3 월)
분납기간	3 월분~5 월분 급여 지급분 신고기간(4/10 ~ 6/10)	2 월분~4 월분 급여 지급분 신고기간(3/10 ~ 5/10)
신고서식	-	분납금액 기재란 반영

주요내용

4. 분납 신청에 따른 업무 절차
○근로소득자(분납 신청)

-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에 분납 신청 표시*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 * 공제신고서 작성단계에서는 연말정산 분납 대상 여부를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일단 분납 의사가 있으면 분납 신청 표시

○원천징수의무자(분납 대상자 선정, 분납 반영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 분납신청한 근로자 중 연말정산 추가납부세액이 10 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해 분납 적용 → 3.10 일까지 연말정산 결과 반영하여 분납금액 표기하고 원천세 신고 납부 → 3 월분, 4 월분 원천세 신고 납부시 분납 이행

업 무 소 개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계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및 자문 ▪ 세무조정, 세무자문 및 Outsourcing ▪ 외국/외투기업 Business Process Outsourcing
(경리, 급여, 총무, Corporate Secretarial Services) ▪ 해외진출자문, 기업설립 및 청산자문 ▪ 국제조세, 이전가격 자문 ▪ 조직, 인사 전략 / HR ▪ 전략수립 및 균형성과관리/평가 /BSC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 지역 및 관광개발 컨설팅 ▪ 기업구조조정, 기업투자유치 자문 ▪ M&A, IPO자문, 자산부채 실사, 주식평가 ▪ IFRS 전환 및 공시자료 검토 ▪ 재무 및 경영리스크 분석, 관리, 경영일반 자문 ▪ 경영계획 및 시뮬레이션 / BSP ▪ 정보화계획/ ISP / IT Consulting ▪ PI / CRM / Risk Management 등 |
|--|---|

문의처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88길 14, 신도빌딩 5~8층, 10층 (우편번호 06179)
 TEL: (02) 316-6659, FAX: (02) 775-5885, E-mail: secretary@crowehorwath.co.kr

발행인

한울회계법인

* * * * *

한울회계법인(Hanul Choongjung LLC)의 Newsletter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판단 또는 결정의 근거로서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는 그 적용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실제 적용시에는 한울회계법인의 해당 전문가와 사전에 상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anul Choongjung LLC is a member of Crowe Horwath International, a Swiss association. Each member firm of Crowe Horwath International is a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y. Hanul Choongjung LLC and its affiliates are not responsible or liable for any acts or omissions of Crowe Horwath International or any other member of Crowe Horwath International and specifically disclaim any and all responsibility or liability for acts or omissions of Crowe Horwath International or any other Crowe Horwath International member.